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미 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8.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옥성면 테니스장 이전

화장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옥성면 다목적강당 건립공사 부지 내 옥성면 테니스장이 편입되어 테니스장을 이전하여 기존 이용자 불만해소 및 주민여가 공간을 제공코자 함.

○ 사랑의 쉼터(구,동산초등학교) 폐교 매입

구미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 중인 사랑의 쉼터(구,동산초등학교) 폐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시설운영의 지속성 확보 및 향후 신축(후원) 기부채납을 받고자 함.

○ 문성배수지 신설

당초 2018년 5월 원호배수지를 증설코자 국방부와 공유재산 교환을 의결 받은 것이었으나, 토지 교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지 매입 및 배수지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고아읍 일대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코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옥성면 테니스장 이전

- 위 치 :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162, 163-4, 164-5번지
- 대 상 : 토지 2,498m², 테니스장 1식
- 사업기간 : 2019년
- 기준가격 : 304백만원(시비 100%)
 - 토 지 : 34백만원(공시지가)
 - 테니스장 : 270백만원(시설비)
- 사업내용 : 테니스장 1면, 헨스(H=4m, L=100m), 조명시설, 화장실 등

☐ 사랑의 쉼터(구,동산초등학교) 폐교 매입

- 위 치 :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884, 884-1, 953-3, 964번지
- 대 상 : 토지 9,193m², 건물 지상1층, 7동 / 연면적 987.14m²
- 사업기간 : 2019년
- 기준가격 : 430.2백만원(시비 100%)
 - 토 지 : 236.2백만원(공시지가)
 - 건 물 : 194백만원(시가표준액)
- 사업내용 : 사랑의 쉼터(구,동산초등학교) 대지 및 건물 매입

☐ 문성배수지 신설

- 위 치 :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산51-13, 산55-7, 문성리 산1-4, 133-17번지
- 대 상 : 토지 11,690m²
배수지 V=10,000톤/일, 도로 L=205m B=6m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기준가격 : 8,475백만원(시비 100%)
 - 토 지 : 75백만원(공시지가)
 - 배수지 : 8,400백만원(시설비)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9건	12,678.14 1식	734.2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7건 1건	11,691 987.14	270.2 194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1식	270
처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재산구분	소 재 지	수 량(m ²)					
계			12,678.14 1식	734.2				
취득	토지	옥성면 대원리 162	823	11	2019년	옥성면 테니스장 이전	한국 농어촌공사	매입
	"	옥성면 대원리 163-4	524	7	"	"	"	"
	"	옥성면 대원리 164-5	1,151	16	"	"	"	"
	기타	옥성면 대원리 162 외	1식	270	"	"	구미시	신설
	토지	도개면 동산리 884	6,136	157.7	"	사랑의 쉼터 폐교 매입	경상북도 교육청	매입
	"	도개면 동산리 884-1	1,891	48.6	"	"	"	"
	"	도개면 동산리 953-3	494	12.7	"	"	국(교육부)	"
	"	도개면 동산리 964	672	17.2	"	"	"	"
	건물	도개면 동산리 884	987.14	194	"	"	경상북도 교육청	"
계								
처분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상수도특별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5건	11,690 1식	8,475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4건	11,690	75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1식	8,400
처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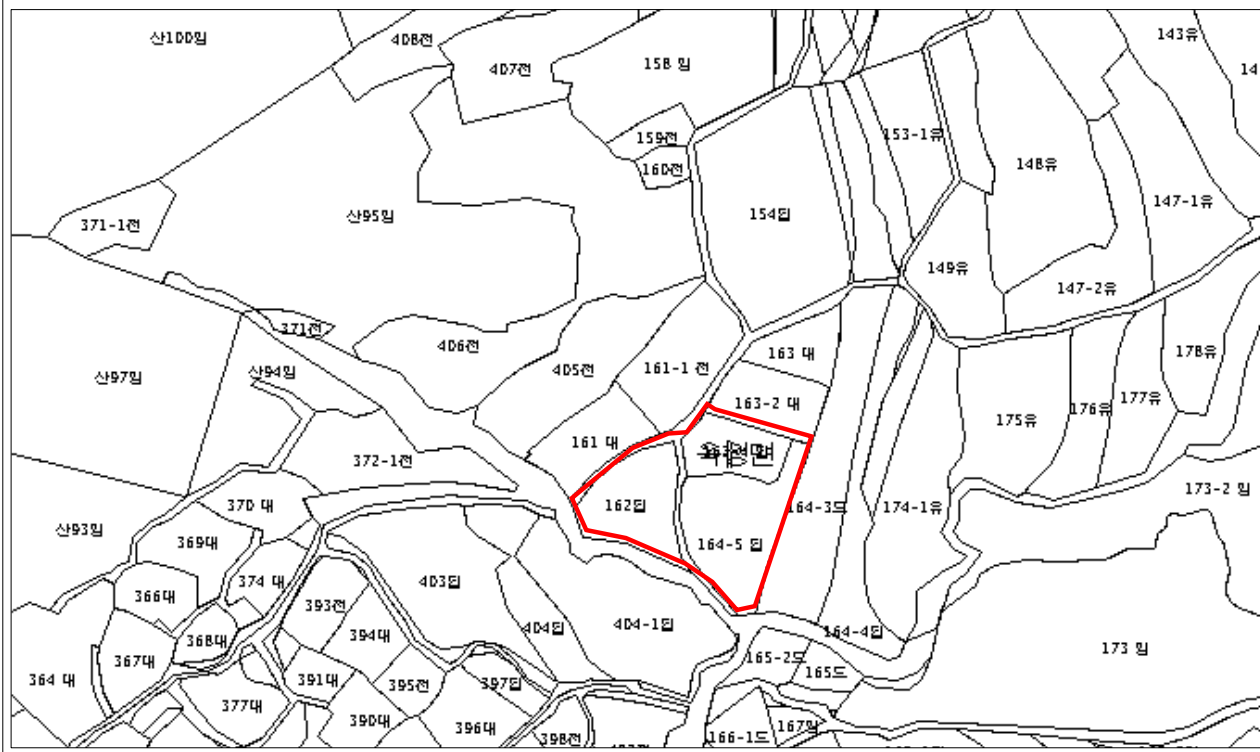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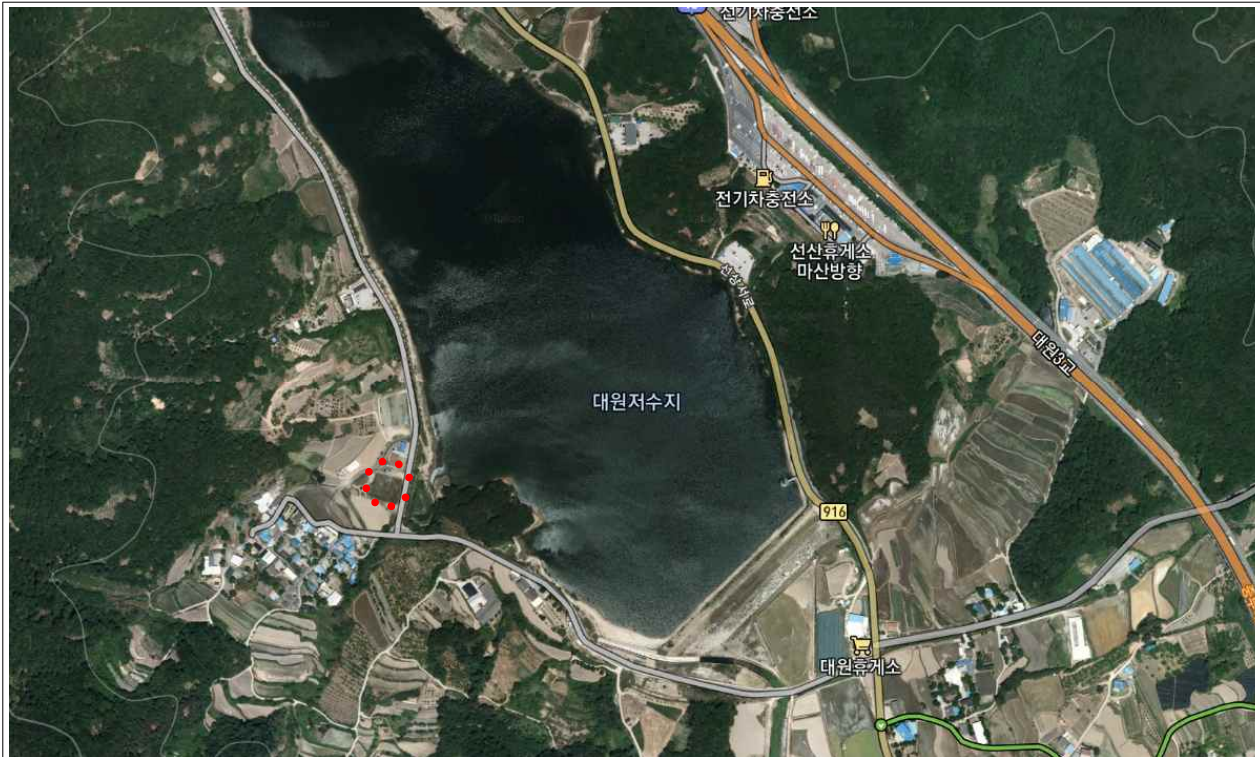
회계명 : 상수도특별회계

[illegible]

위 치 도

□ 옥성면 테니스장 이전

○ 소재지 :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162번지 외 2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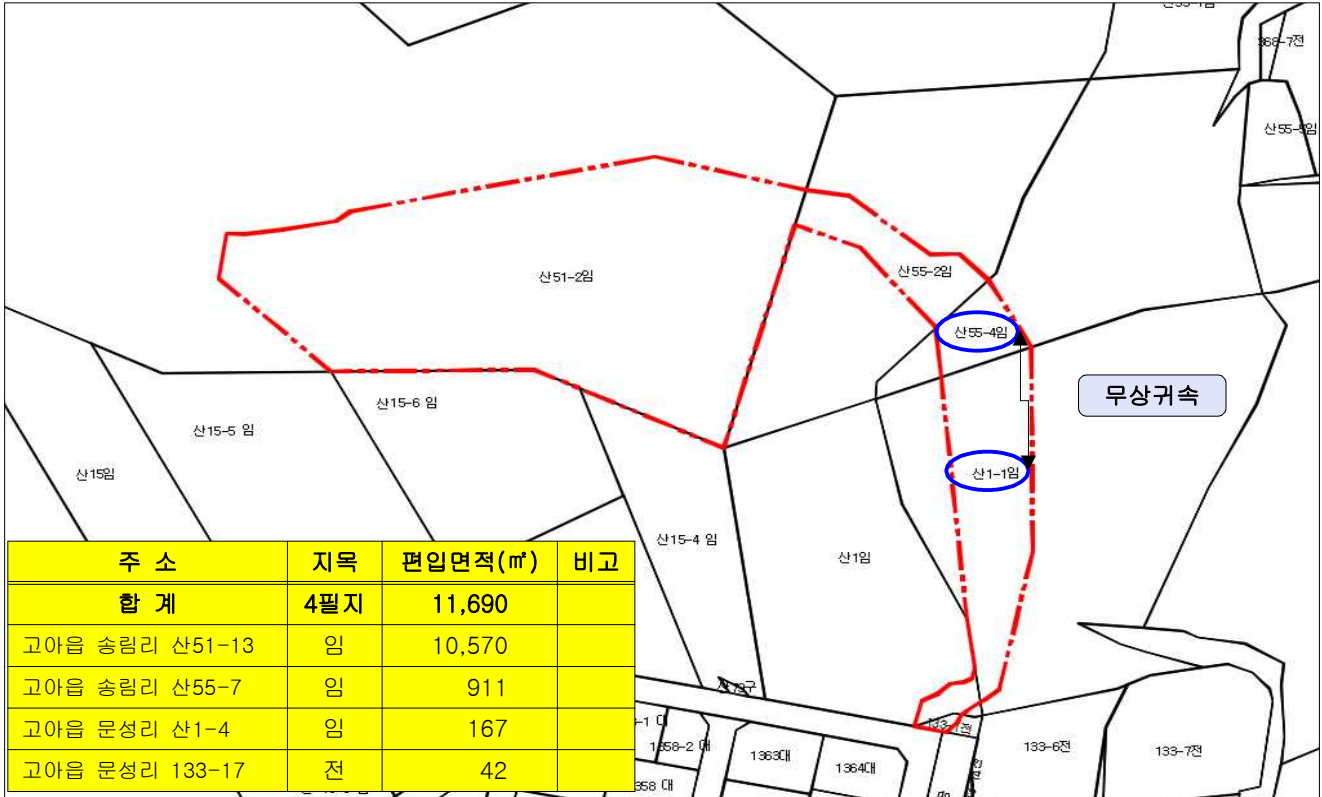
□ 사랑의 쉼터(구,동산초등학교) 폐교 매입

○ 소재지 :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884번지 외 3필지



□ 문성배수지 신설

○ 소재지 :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산51-13번지 외 3필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 실 · 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이 관 응
	담 당	이 재 균
	담 당 자	전 유 향 (480-5072)